

제192회 영등포구의회  
2015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5. 12. 9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100호로 2015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(다음연도 2.28 ⇨ 12.31) 포상금 지급대상을 조정하고,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인 ‘지난년도 체납액’에서 ‘지난 연도 체납액(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)’토록 하여 지급대상을 조정(안 제2조제2항제1호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 기본법」 「지방재정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2014.5.28. 「지방재정법」 개정<sup>1)</sup>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(12.31)로 폐쇄됨에 따라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‘지난년도 체납액’에서 ‘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’로 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세입징수 포상금을 조정 하려는 것임.
- 즉, 2015회계연도에 부과한 세입금에서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, 부과 종료일인 2015.12.31일 이후 2개월이 경과한 2016.3.1일부터 그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됨.
- 상위법의 시행에 맞추어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법령 체계 간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차질 없는 세무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.

---

1) 제8조(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. 다만,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,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.